

【기획조사】

세계 각국 무역상의 기술장벽 도입 현황
－ 2004년 WTO 통보문 사례를 중심으로 －

2005. 5

KOTRA

<목 차>

I . 기술장벽의 의미	1
1. 도입배경	1
2. 기술장벽의 도입 추세	2
II . 2004년 주요국 기술장벽 통보 현황	5
1. WTO 통보의 의무	5
2. 2004년 통보현황	6
III . 시사점	13

I. 기술장벽의 의미

1. 도입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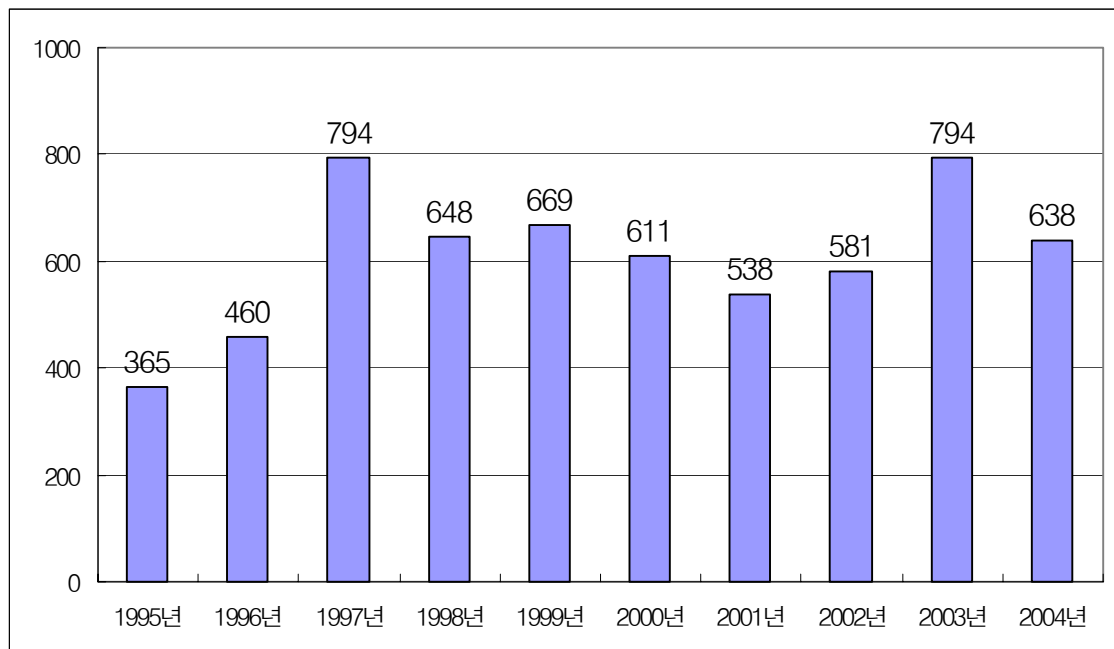
□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, 상품교역에서 관세장벽이 낮아지고 다른 전통적 비관세 조치의 도입이 어려워지면서, 각종 표준 및 기술규격의 적용을 통한 기술장벽의 도입 확산

○ WTO에 통보되는 무역상 기술장벽(TBT : Technical Barriers to Trade) 통보문 건수 역시 지속 증가

○ WTO 출범 당시 365건에 불과했던 통보 건수가 2003년에는 794건에 달함.

- 1995~2004년 간 통보건수는 총 6098건이며, 통보국가는 총 84개국

<그림 1> 연도별 WTO TBT 통보건수 추이



자료원 : WTO

2. 기술장벽의 도입추세

- ☐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표준(standard)과 기술규정(technical regulation)은 교역활동에 제한적 요소로 작용
 - 기술표준 및 규정은 각국이 안전, 보건위생 등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그 목적은 자국시장 내에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
 - 그러나 최근 국가간 교역이 활발해 지면서 각 국은 자국 시장에 적용되는 기술표준 및 규정을 외국의 생산자에게도 적용
 - 특정한 표준화의 수준에 미달하는 생산자, 표준화 제도의 절차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생산자에게는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
- ☐ 제품 자체만이 아니라 공정이나 생산방법에 대해서도 기술장벽 도입 추세
 - 급속한 기술발달에 따른 제품의 다양성이나 복잡성으로 인해 기술표준화의 대상범위 확대 및 세분화
- ☐ 자국의 기술 우위성을 이용, 자국 생산자들만이 충족할 수 있는 기술 표준을 도입하여 외국의 생산자들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동시에 자국산업을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효과
 - 제품을 특정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기술규정에 맞도록 제품의 기술명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신기술 도입
 -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입국의 기준에 맞는 새로운 생산설비를 설치해야 할 필요

□ 환경 기술장벽의 도입

- 최근 기술표준의 무역장벽 효과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환경 기술장벽
- 환경 라벨링 (Eco-label)
 - WTO TBT협정에서는 상품만이 아니라 공정 및 제조방법에 대해서도 협정이 적용되면서 상품의 생산과 소비 및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의 환경상의 위해 여부에 대해 협정에 적용
- 환경라벨 제도가 각국별로 상이하고, 의무적인 제도로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무역장벽으로 작용
 - 일부 국가는 환경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환경규제를 도입하는 사례도 있어 국제 통상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함.
- 환경라벨 표준화 작업 : WTO TBT협정은 ISO 기준을 특별한 원칙이 없는 한 회원국이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
 - ISO 14000 시리즈 :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호를 위한 기업체들의 경영관리 체제, 즉 환경경영, 환경심사, 환경라벨링, 환경성과 등에 대한 규격
 - ISO 표준은 자발적 표준으로 모든 국가들이 반드시 채택할 필요는 없음.
 - 단, 최근에는 많은 국가들이 ISO 표준을 국내법으로 채택하거나 구매자측에서 공급자에게 요구하도록 하여 사실상 강제력을 갖게 됨.

□ 식품안전 기술장벽

○ 식품의 위생과 안전문제에 관한 기술장벽 도입

- WTO SPS협정(위생검역협정)은 기준이 준수되지 않았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을 이용가능한 과학적 및 기술적 정보와 관련 기술 등에 의해 최소한의 조치만 취하도록 규정

○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미국-EC 간 유전자변형 농산물(GMO) 상표부착 요건, 미국의 식품영양성분 표시 의무는 상기 SPS협정의 당초 목적을 넘어선 무역제한효과에 대해 논의하게 함.

<유전자변형 농산물(GMO) 표시제 관련 논쟁>

▶ GMO 수출국들의 입장

- GMO 식품이 기존의 식품과 그 과학적 구성에서 차이가 없을 경우, 기존의 식품과 모든 면에서 동등한 식품으로 취급되어야 함.
- 실질적 동등성(substantial equivalence) 인정 요구
- GMO 식품이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, 별도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명백한 ‘비관세장벽’이라고 주장

▶ GMO 수입국들의 입장

- GMO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, 과학적 입증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전성을 담보할 때까지 기존 식품과 동일한 취급을 할 수 없음.
-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소비자들의 최소한의 알 권리 보장
- GMO 식품이 그렇지 않은 식품들과 동질성(equivalence)을 갖고 있음을 불인정

<GMO 의무표시제 실시국가>

국가	EU	일본	한국	호주	뉴질랜드	대만
시행시기	1998	2001	2001	2001	2001	2003

II. 2004년 WTO 기술장벽 통보현황

1. WTO 통보의 의무

☐ WTO TBT협정 상 정보공유의 의무

- 어떤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과의 교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을 채택하려 할 경우, 그 조치에 관한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그 조치가 국제표준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다른 회원국의 이해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공표해야 함.
- WTO에 채택하려는 기술규정의 목적과 합리적 이유에 관한 설명을 제출해야 하고, 아울러 당해 기술규정이 적용될 제품이 무엇인지 다른 회원국들에게 통보해야 함.
- 이러한 통보는 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회원국이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도입 초기 단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취해져야 함.

☐ 적극적인 정보제공의 의무

-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 회원국은 채택하려는 기술규정의 상세한 내용이나 사본을 다른 회원국에게 제공
- 관련 국제표준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해명
- 단일 문의처를 두어 각 회원국이 정보를 요구하거나 해당 표준에 대한 질의를 할 때 창구로 활용
- 우리나라의 경우, 공산품 표준에 대한 문의처는 기술표준원

2. 2004년 TBT 통보현황

- 2004년에 각 회원국으로부터 접수된 TBT 통보문은 총 638건이며, 통보 국가는 총 54개국
- 인체 건강보호, 기만적 관행방지 등을 위한 조치가 각각 340건, 154건이 통보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
 - 1개 분야 이상에 관련된 사안이 총 155건
- 환경보호, 신기술 도입에 따른 법제정 등도 각각 88건, 65건

※ WTO TBT협정의 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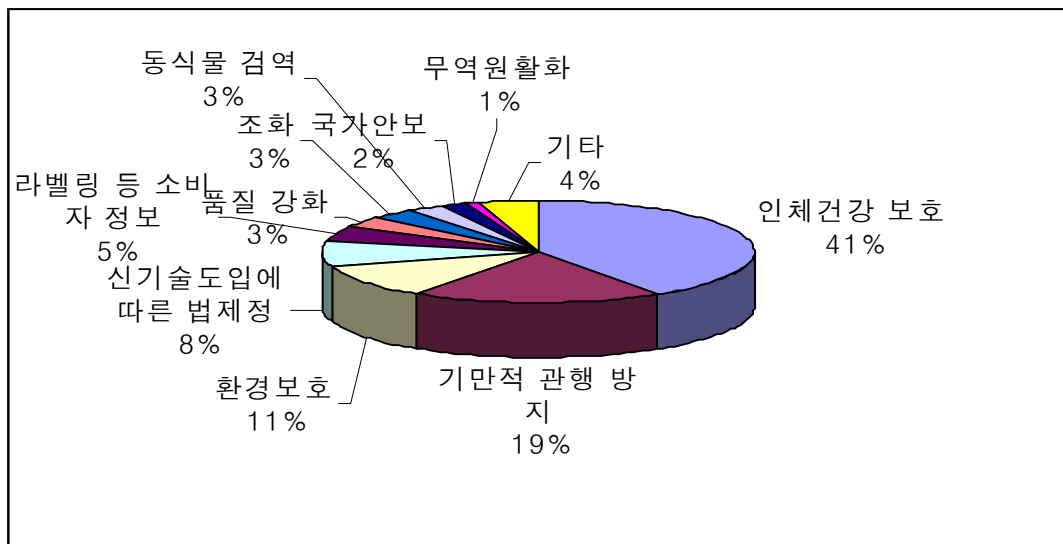
- 1) 사람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
 - 인체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규정이나 표준의 제정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
- 2)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
 - 포획 가능한 어류의 크기 제한, 멸종위기 동식물 포획 금지 등 조치
- 3) 환경보호
 - 인체의 안전과 건강,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 규정과는 별도로 언급
 - 사람이나 동식물에 직접적으로 해가 되지 않더라도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에 대한 기술규정이나 표준 인정
- 4) 기만적 관행의 방지
 - 제품에 부착된 상표, 원산지 표시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부정확하거나 기만적인 정보를 얻음으로써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당 규정 인정

<표 1> 분야별 2004년도 TBT 통보 건수

구 분	건수
인체건강 보호	340
기만적 관행 방지	154
환경보호	88
신기술도입에 따른 법제정	65
라벨링 등 소비자 정보	43
품질 강화	28
조화	27
동식물 검역	24
국가안보	15
무역원활화	9
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	2
무역장벽 제거 및 완화	1
해당분야 없음	2
기타	37

주 : 1개 이상 분야에 관련된 사안은 각각 중복 집계
 자료원 : WTO

<그림 2> 2004년도 TBT 통보문의 분야별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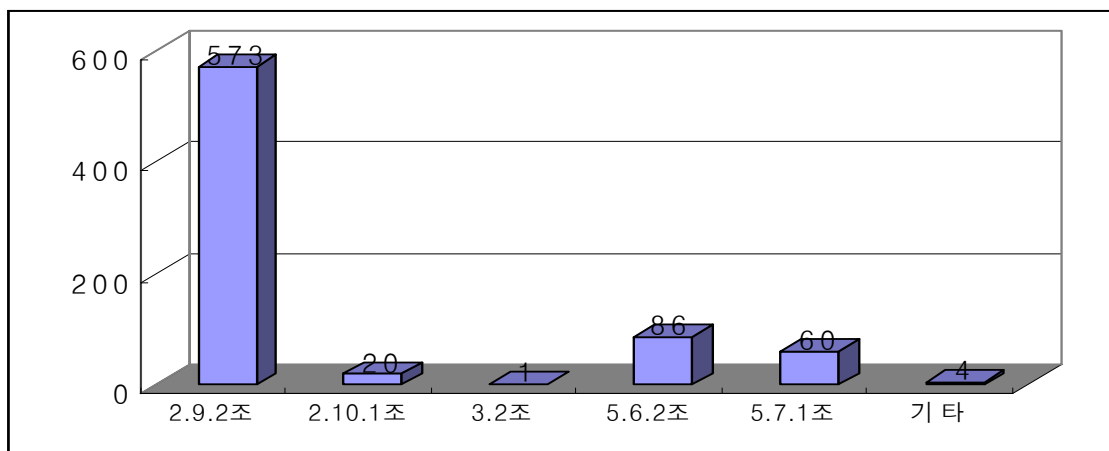


주 : 1개 이상 분야에 관련된 사안은 각각 중복 집계
 자료원 : WTO

□ 건강, 환경, 소비자 보호(라벨링 포함) 등을 이유로 도입되는 기술장벽 증가 추세

- 상기 <그림 2>에서 볼 수 있듯이, 인체건강 보호, 소비자 보호, 환경보호, 라벨링 등에 관한 통보건수가 전체의 76% 차지
- 2004년 통보문 중에는 자국에 새로 도입된 기술규정의 목적과 합리성에 대해 설명(WTO TBT협정 2.9.2조)에 대한 내용이 573건으로 가장 많음.
- 적합성판정 절차에 관한 내용(WTO TBT협정 5.6.2조)이 86건, 긴급한 이유로 신규 기술규정을 도입한 내용(WTO TBT협정 2.10.1조)이 20건임.

<그림 3> 2004년도 TBT 통보문의 협정조문별 건수



※ WTO TBT협정문 조문별 주요 내용

2.9.2조 : 기술규정의 목적과 이유, 해당 상품을 WTO 사무국에 통보
2.10.1조 : 긴급한 사안에 대한 기술규정 통보
3.2조 : 지방정부가 도입한 기술규정의 통보
5.6.2조 : 적합성판정절차의 목적, 이유, 해당상품 통보
5.7.1조 : 긴급한 사안에 대한 적합성판정절차 통보

주 : 1개 이상 조문에 관련된 사안은 각각 중복 집계

자료원 : WTO

□ 국별로는 이스라엘, 태국, 미국, 잠비아 등이 각각 44건, 38건으로 가장 많음.

○ 중남미,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통보건수 다수

- DDA협상이 진행되면서, 개도국의 기술규정 및 표준, 적합성 판정 등에 대한 통보가 독려되는 분위기에 따른 것으로 보임.
- 향후 이들 개도국들이 TBT 협상에 활발히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통보된 사례의 국제기준에의 일치를 위한 기술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.

○ 우리나라는 기계, 자동차, 화학 등의 분야에서 총 20건을 통보

<표 2> 국별 2004년도 TBT 통보 건수

국명	통보건수	국명	통보건수	국명	통보건수
과테말라	13	스리랑카	14	중앙아프리카	5
그라나다	2	스웨덴	8	체코	8
그루지아	3	스위스	11	칠레	4
기아나	2	스페인	1	캐나다	32
남아공	4	슬로바키아	1	케냐	11
네덜란드	7	슬로베니아	15	코스타리카	22
노르웨이	2	아르메니아	9	콜롬비아	14
뉴질랜드	8	아르헨티나	18	태국	44
니카라과	16	엘살바도르	18	튀니지	1
대만	6	영국	1	트리니다드 토바고	7
덴마크	20	오만	1	페루	4
독일	2	온두라스	13	프랑스	6
리투아니아	1	이스라엘	44	핀란드	2
멕시코	14	이태리	3	필리핀	4
미국	38	일본	22	한국	20
베네수엘라	3	자메이카	2	호주	10
브라질	16	잠비아	38	홍콩	6
세인트루시아	10	중국	23	EU	2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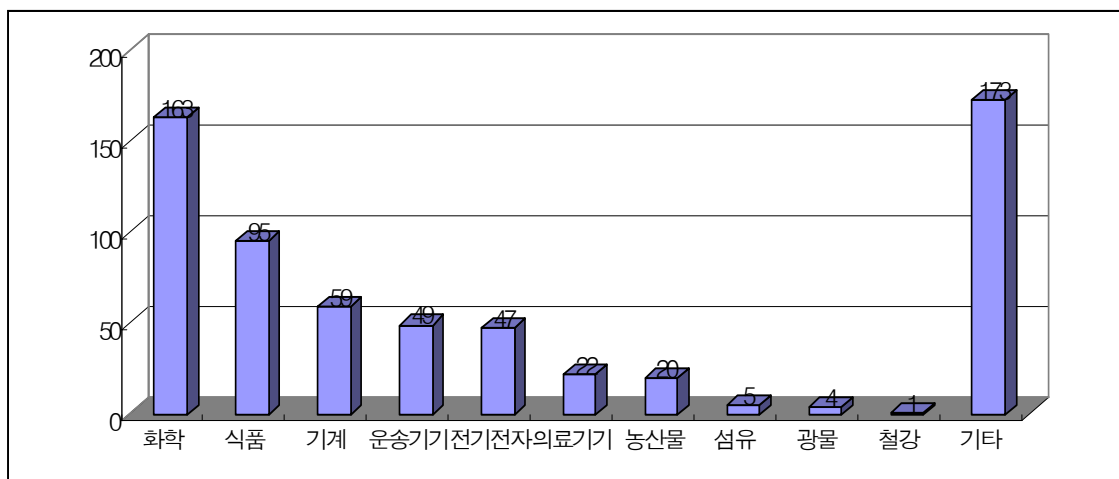
자료원 : WTO통보문

□ 품목 및 분야별로는 의약품 및 화학(163건), 식품(95건), 기계(59건), 운송기기(49건), 전기전자(47건) 등에서 통보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음.

○ 의약품 및 화학, 식품, 운송기기 등은 안전, 인체에의 유해성 등에 관한 통보가 집중되었던 반면, 기계와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주로 적합성판정에 대한 통보가 다수

○ 이 밖에 전 품목에 걸쳐서 원산지 표시 등과 같은 기만적 관행의 방지, 라벨링 제도 등에 대한 통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.

<그림 4> 2004년도 TBT 통보문의 품목별 건수



주 : 중복건수 포함

자료원 : WTO통보문

□ 화학 분야에서는 미국(13건), 잠비아(23건), 캐나다(12건)가 가장 많았고, 식품 분야에서는 아르헨티나(10건) 등 중남미 국가와 태국(10건), 이스라엘(8건) 등이 많았음.

□ 기계 분야에서는 중국(8건)이 최다 통보국이며, 운송기기 분야에서는 미국(6건), 멕시코(3건) 등 25개국 이 통보. 전기전자분야에서는 태국(9건), 이스라엘(7건)이 가장 많은 통보 건수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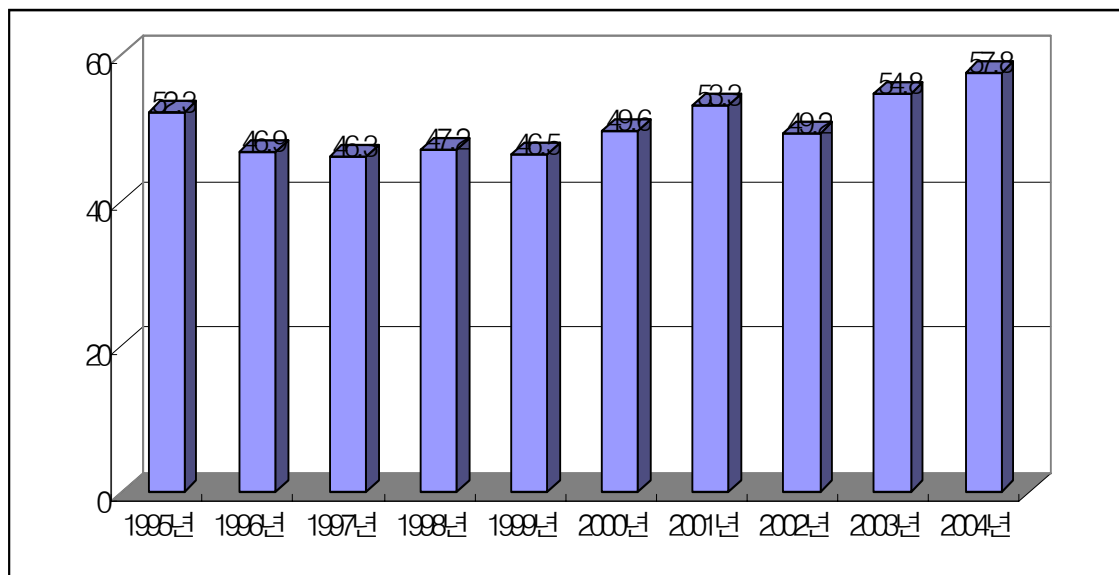
□ WTO 협정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기술규정이나 표준, 적합성 판정절차의 통보 시 타회원국에 대해 합리적인 서면 의견제시 기한 (time-limit for presentation of comments)을 부여하게 되어 있음.

○ WTO의 TBT위원회는 의견제시 기한을 60일로 권장하여 타 회원국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함.

○ 1995년 WTO 출범 당시에는 평균 의견제시 기한이 52.3일이었으나, 2004년에는 57.8일로 늘어나 TBT위원회의 권장 사항인 60일에 근접한 모습을 볼 수 있음.

○ 충분한 의견제시 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특정 조치가 무역왜곡 효과로 즉시 도입되는 것을 방지하고, 전 회원국이 충분히 인지하여 국제표준과의 일치성이 검증되는 데 필요한 사항임.

<그림 5> TBT 통보문의 평균 의견제시 기한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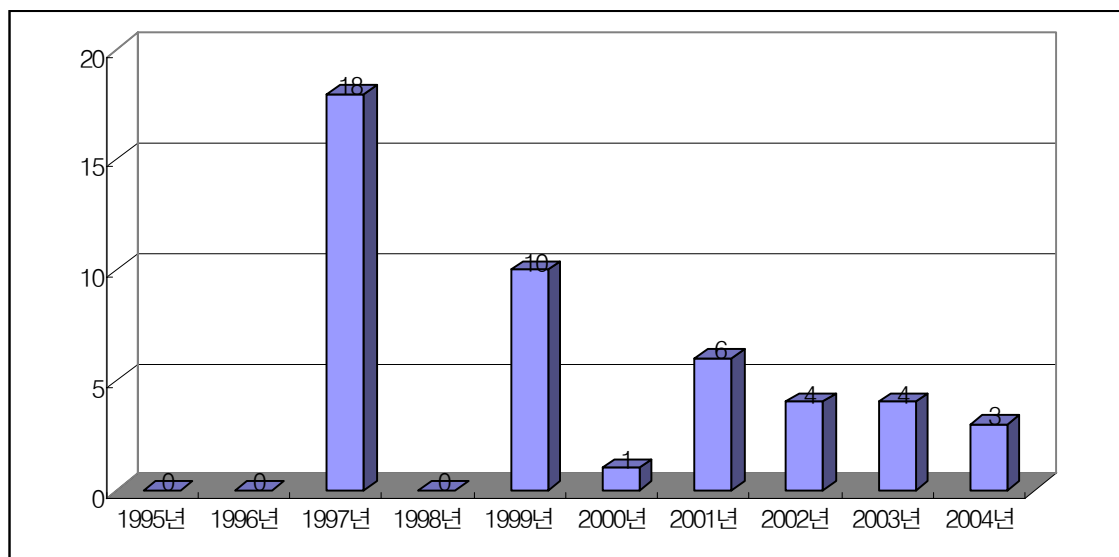
자료원 : WTO

□ WTO TBT 협정은 기술규정과 표준, 적합성판정 절차 등에 있어 회원국간 합의에 의해 절차상의 단순화 및 상호인정 등을 적극 장려

○ 2004년의 경우, 총 3건의 상호인정체결 및 의향서 교환이 이루어졌음.

- 대만-캐나다 전자기 적합성 기준에 관한 상호인정 의향서 교환
- 미-EU 상호인정협정
- 대만-호주 전자기 적합성 기준에 관한 상호인정 의향서 교환

<그림 6> WTO 회원국 간 TBT관련 상호인정 및 의향서 체결 현황



자료원 : WTO

○ 회원국간 상호인정 및 의향서 체결이 성립되거나 협의를 개시하는 경우, 당사국 중 적어도 한 회원국은 합의 내용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합의의 대상품목을 WTO 사무국에 통보해야 함.

Ⅲ. 시사점

□ WTO 체제 내에서 합법적인 기술장벽 증가 추세

- <그림 1>에서 보여 주듯이 TBT 통보건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, 통보국가도 중남미, 아시아 등 개도국으로 확대
- 이는 인체의 건강, 안전, 품질보증 등을 이유로 까다로운 기술 규정과 표준, 적합성 판정절차 등을 도입하되 WTO에 통보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존의 무역왜곡 효과를 가져온다는 이미지를 상쇄시키는 것으로 파악
- 실제로 인간 생명보호,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는 각종 인증이나, 라벨링 등은 소비자 단체들로부터 호응을 얻음으로써 무역장벽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사례 증가
- 특히 선진국의 높은 기술규정은 개도국의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도 수행

□ 상호인정협정 등을 통한 기술장벽 회피

-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은 자국 기업의 해당국가 진출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, 협정이 적용이 되지 않는 타 국가에 비해 경쟁력 획득
- 신규 가입국인 대만이 캐나다, 호주 등과 이미 상호인정협정 의향서를 교환한 것은 WTO 가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
- 미국, EU 등 선진국과의 상호인정협정은 기술력 우위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함.

□ 기술규정, 표준, 적합성 판정절차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시키려는 노력 확산

○ TBT 관련 통상분쟁의 대부분이 국제기준과의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무역 왜곡효과를 야기한다는 근거에서 비롯

○ 우리나라 역시 국내의 분야별, 품목별 표준에 관한 법규가 이러한 관점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, 우리 기술력이 우위에 있는 표준을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는 노력 필요

끝.